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주간보호 이용료(2023년기준)

- * 공통기준 :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상~ 10시간미만
- * 월평균 이용일수 22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월 한도액	1일 비용수가	급여이용액 (본인부담금-15%)		비급여 (1일2식대+간식) 1일4,500	월이용액 (급여+비급여)
			일일부담금	월부담금		
3등급	1,417,200	55,080	8,260	181,720	112,500	294,220
4등급	1,306,200	53,580	8,030	176,660	112,500	289,160
5등급	1,121,000	52,050	7,800	171,600	112,500	284,100
인지등급 (월12회)	624,600	52,050	7,800	93,600	54,000	147,600

구분	월 한도액	1일 비용수가	급여이용액 (본인부담금-9%)		비급여 (1일2식대+간식) 1일4,500	월이용액 (급여+비급여)
			일일부담금	월부담금		
3등급	1,417,200	55,080	4,950	108,900	112,500	221,400
4등급	1,306,200	53,580	4,820	160,040	112,500	218,540
5등급	1,121,000	52,050	4,680	102,960	112,500	215,460
인지등급 (월12회)	624,600	52,050	4,680	56,160	54,000	110,160

구분	월 한도액	1일 비용수가	급여이용액 (본인부담금-6%)		비급여 (1일2식대+간식) 1일4,500	월이용액 (급여+비급여)
			일일부담금	월부담금		
3등급	1,417,200	55,080	3,300	72,600	112,500	185,100
4등급	1,306,200	53,580	3,210	70,620	112,500	183,120
5등급	1,121,000	52,050	3,120	68,640	112,500	181,140
인지등급 (월12회)	624,600	52,050	3,120	37,440	54,000	91,440

마. 급여계약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바.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사.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아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